

지원, 정덕초병설유치원, 승곡초병설유치원)등 12개 학교를 신설하고, 위치변경에 따른 주소변경 1개교(혜화여고 : 종로구 혜화동→강북구 수유동) 그리고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중학교 교명 변경 9개교(송인여중→송인중, 진농여중→전일중, 연희여중→연희중, 도봉여중→신도봉중, 상계여중→상계제일중, 강남여중→강현중, 봉천여중→봉원중, 상도여중→상현중, 성수여중→성원중)와 학과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교명 변경 3개교(선린정보산업고→선린인터넷고, 동호공업고→동호정보공업고, 서초전자공업고→서초전자고)임.

○ 이번에 개정 요구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다른 조례와는 달리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변경(학교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라기 보다 교명 변경, 주소 변경 등 부수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학교 신설이나 이전은 수년 전에 이미 학생수용 계획에 의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정책결정의 선악을 판단하기보다는 학교 명칭이나 주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동 조례가 정책결정의 반영을 위한 성격을 갖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이번에 신설되거나 교명 변경된 학교의 대부분은 학교명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동창회, 학부모, 교사, 지역유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게는 40여%에서 많게는 99%까지의 동의를 받고 당해 교명제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침.

특기할 내용으로는 통상 교명변경이나 제정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데 대부분 절대 다수의 동의를 거쳐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명 선택에 있어서 치열한 경합의 경우가 있었음.

즉 진농여중을 전일중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전일중이 47%, 전인중 40%로 의견이 양분되었으나 전일중으로 채택되었으며, 도봉여중도 신도봉중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47%의 찬성으로 채택된 경우이며, 상계여중의 경우에도 45%의 찬성을 받음. 또한 강남여중을 당초에는 신강중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기존의 신강초등학교(양천구 소재)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다시 강현중으로 변경된 경우임. 또한 선린인터넷고등학교는 인터넷이라는 의미의 한정성과 생소함으로 인해 당초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유보되었으나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등의 절대적인 지지가 확인되어 선린인터넷 고등학교로 제안됨.

또한 서울공진초 병설유치원(1학급)을 신설키로 했으나 1학급 설립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취소된 바 있음.

○ 그 밖의 학교가 신설되는 상봉중학교(공정률 : 91%, 준공예정일 2000.11.20), 수송중학교(공정률 : 80%, 준공예정일 2001.2월 초), 서울정민학교(공정률 : 93%, 준공예정일 : 2000.11.12) 그리고 학교가 이전되는 혜화여고(준공일 : 2000.10.15)는 그 공정률이나 교원확보 등 학교신설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14
----------	-----

2000년 11월 일
문화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장
 - 나.회부일자 : 2000년 10월 23일 회부
 - 다.상정일자 :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
위원회(2000. 11. 9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최 령)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우수한 문화재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공고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구입공고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본 조례안은 우수한 문화재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공고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됨.

○ 현재 유물 구입은, 유물구입공고→유물수집실무위원회 평가(1차)→유물평가위원회 평가(2차)→개관준비위원회 기획·유물분과회의 평가(3차)→유물구입 계약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경매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긴급성을 고려하여 3단계 과정중 중간단계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 요구한 부분도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입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는 그 최소 가치로 인하여 수집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유물로서의 가치가 기왕에 검증된 것인만큼 신속한 수집을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함.

○ 이번에 개정 요구된 부분 외에 동 조례 제5조(유물기증) 제1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인용 조문 중 “제25조”는 '99년도 12월 동법 개정시 내용 변경 없이 “제8조”로 개정되었으므로 동조례 제5조 역시 개

정되어야 함.

※ 제5조(유물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이유

1999년 12월에 개정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이용 조문을 개정 조항에 맞게 수정

나. 주요골자

○ 제5조1항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5조”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8조”로 함(제5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4. 전국체육대회·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